

「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)

○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 조문을 명시하는 것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”를 “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강제징수)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